



농식품부,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 ①농업진흥지역내 휴게음식점 설치, ②햇빛소득마을 재생에너지 지구 지정 의제, ③동물 미용업 출장영업 허용 등 50개 현장체감형 규제합리화 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8일(월)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현장간담회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 중 현장체감도와 시급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과제는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0개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발전

질서있는 태양광 발전 도입과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저수지·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 설치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해 임차하는 저수지·농지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통해 재산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햇빛소득 마을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를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귀농·귀촌하는 청년들의 농촌 창업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전북 타운홀미팅(2.27.) 시 건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 음료·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특화지구* 특성에 맞게 설치하는 필수 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허가 절차를 신고로 간소화하여 농촌 특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빈집철거 지원사업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 8개 지구 :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

** 예시) 축산지구: 도축장, 동물병원 등,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일반숙박시설, 야영장 등

②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한다.

소규모 농업인의 온라인 도매거래 참여 확대를 위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을 허용하고, △통합RPC 중심으로 운영되던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 지원 대상을 일반 RPC까지 확대한다. 또한, △비의도적 오염으로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 생산물을 폐기하되 친환경 인증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과정에 참여한 배우자·자녀 등도 공동생산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인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푸드테크 등 미래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식품기업뿐만 아니라 로봇 등 비식품 분야를 포함한 푸드테크 기업에도 컨설팅과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고, △동물용의약품 위탁전문생산기업이 제조업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개선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을 완화(해당국가 3년간 경영→1년) 하고, △식품·외식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모집 주기를 2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운영 범위도 석사과정에서 박사 과정까지 확대하여 K-푸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③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금액을 3,700만원에서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상향하고,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을 40kg 포대며 기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여 수확기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한다.

한편, 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보호를 위해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최종 지급액 상한을 평가액의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임대 간척지 재해 발생 시 임대료 감면 기준을 법인별 피해율에서 필지별 피해율로 변경한다.

④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반려동물 양육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동물 미용업을 등록한 업체의 출장 영업을 허용하고, △이동식 화장장 등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 동물자연장 시설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현재 지역별 최고·최저·평균값만 공개하는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개별병원별로 공개하도록 개선하고, △반려동물의 심장질환, 당뇨 등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을 마련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⑤ 민생규제 합리화

농업인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해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를 배달앱 등 플랫폼과 음식 포장재·영수증 등에 모두 표시하도록 한 중복규제를 플랫폼에만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병원성 AI발생 시 이동제한으로 병아리 폐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토종닭 부화장에도 소득안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현행은 오리부화장만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통시장 중심 농산물판매권 사용 범위를 골목상권의 농축산물판매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생산년도가 다른 인삼을 혼합한 제품의 연산 표시기준*을 마련한다.

* ①모든 생산년도를 표시하거나 ②가장 오래된 개체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 규제합리화는 현장을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똑똑한 규제를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규제 건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성과가 모여 국민이 체감하는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불합리하고 황당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제3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과제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최 정 미 (044-201-1361)
		담당자	사무관	박 순 홍 (044-201-1362)

<붙임>

제3차 농식품 규제합리화 전략회의 주요과제

1. 에너지 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 저수지·담수호 등에 수상형 태양광 설치 기준 완화

현행 만수면적 기준으로 저수지 10%, 담수호 20%까지 설치 허용

개선 수상형 태양광 설치 허용기준 상향(저수지 10%→15, 담수호 20%→30)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지침」 개정, '26.12월)

기대효과 수질 모니터링 및 환경영향요소를 고려한 기준 상향을 통해 수질은 보호하면서 태양광 사업성은 증대하여 농촌 재생에너지 생산성 증대

□ 햇빛소득마을 임차 저수지·농지에 대한 분리과세 **행안부 협의**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농업외 임차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개선 햇빛소득마을 사업부지 임차 저수지·농지에 대해 분리과세하여 재산세율 인하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추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6.12월)

기대효과 햇빛소득마을 임대료 감면 및 주민의 안정적인 수익 보장으로 사업 확산

□ 햇빛소득마을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하여 발전사업 가능 근거 마련

현행 주민참여조합이 마을 내 유희부지·농지 등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 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해 조성·확산 어려움

* 농업진흥지역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이 필요해 신속 추진 어려움

개선 햇빛소득마을 등 주민참여조합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추진 시 재생에너지 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의제해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26.5월)

기대효과 농업생산기반 보존 및 농업인·농촌주민의 소득 향상 등 농업·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재생에너지 모델 구축

□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현행 카페·제과점 등 휴게음식점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설치·운영 불가

개선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촌체험객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음료·제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허가 허용 (「농지법 시행령」 개정, '26.8월)

기대효과 청년 귀촌활성화 등 농촌 생활인구 증대에 따른 농촌 활력 제고와 소득 증대

□ 빈집 철거지원 사업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국토부 협업**

현행 빈집 소유자가 직접 시·군(또는 읍·면)에 방문하여, 빈집 철거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개선 온라인 신청이 가능토록 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온라인서비스 구축」, '26.6월)

기대효과 빈집 정비 활성화 및 농촌 정주여건 개선

2.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매출액에 관계없이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허용

현행 판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을 위해서는 매출액 기준(연매출액 10억원) 충족 필요

개선 판매자에 대한 온라인도매시장 매출액 가입요건 폐지

(「온라인도매시장 업무규정」 개정, '26.9월)

기대효과 소규모 농업인도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 고품질 쌀유통 활성화사업 참여요건 완화

현행 통합RPC* 대상 가공시설 현대화, 벼 건조저장시설 신·증설 지원

*유형 : 농협+농협, 농협+민간, 민간+민간 등

개선 일반RPC*도 시설 개보수 지원대상에 포함

*유형 : 통합RPC가 아닌 단독 농협RPC 등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지침」 개정, '26.4월)

기대효과 생산·가공 거점별 고품질쌀 생산과 유통 활성화

□ 친환경 농업 확대를 위한 인증 취소기준 합리화

현행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될 경우 일률적 인증취소 처분

개선 비의도적 오염 증빙 및 오염 방지 조치*를 한 경우 인증 유지(생산물은 폐기)

* 예) 관행 필지와 경계망 설치, 친환경 인증 풋말 설치 등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26.6월)

기대효과 결과 중심의 행정처분 기준을 책임과 원칙에 부합하는 과정 중심의 행정 처분으로 전환하여 과잉규제 완화

□ 친환경 농산물 생산 참여자도 공동생산자로 표시 허용

현행 친환경 인증받은 자만 인증품 생산자로 표기가 가능

개선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공동생산자로 병기 가능하도록 개선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26.6월)

기대효과 공동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신규 진입하려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로봇·AI 활용 중소 푸드테크 선도기업 육성 지원

현행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 식품기업 대상 품질·위생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개선 중소 푸드테크기업*(로봇 등 비식품 포함)도 선도기업 육성 지원대상으로 확대

*「푸드테크산업법」에 따라 '푸드테크산업 사업자'로 신고한 기업
(「중소 식품기업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6.3월 既 완료)

기대효과 식품산업 외연 확대하고 첨단농생명 산업 경쟁력 향상

□ 동물용의약품 제조·품목 허가기준 합리화

현행 제조품질기준(GMP)을 충족하는 제조시설 갖추었으나 자체 제품생산(품목허가) 없이 위탁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려는 기업은 제조업 진입이 불가

* 동물용의약품 의약품 제조업 허가: 제조시설기준 충족 + 1개 이상 품목(제품)허가 보유

개선 위탁생산전문기업(CMO)이 품목허가 없이 제조업 허가가 가능하도록 제조업 허가과 품목허가를 분리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26.9월)

기대효과 동물용의약품 산업구조 다양화(분업화·전문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기준 완화

현행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여야 함

개선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 경영 기간 기준 완화(최근 3년→1)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6.12월)

기대효과 해외 우수 한식당 확산으로 한식의 품질 향상, K-푸드 확산 등에 기여

□ 푸드테크 계약학과 모집범위 확대

현행 식품외식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를 석사학위 과정으로 운영하고, 학과생은 2년 단위로 모집

개선 학위 과정 확대(석사 한정→박사학위 운영), 매년 신규 모집 가능토록 개선

(「식품산업 인력양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26.2월 既 완료)

기대효과 푸드테크분야 인력의 전문·고급화를 지원하여 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

3.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

□ 면적직불금 지급 제외 요건인 농외소득 상한액 기준 현실화

현행 2009년부터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개선 지급대상 제외 농외소득을 4,30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고시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농업농촌공익직불법」개정, '26.5월)

기대효과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를 통해 농가 소득안정성 제고

□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 상한 상향

현행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시 지급액 상한(평가액의80%)이내에서 최종 지급액이 결정됨에 따라 농가의 적극적 방역노력 유도에 한계*

*농가가 적극적인 방역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축평가액의 최고 80%로 제한

개선 최종 지급액 상한을 가축평가액 기준 상향(80%→ 90%)하고, 주요 가축전염병* 최초 신고 농가에 대해서는 100%까지 상향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26.9월)

* 5개 질병: 구제역, 럽피스킨병,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

기대효과 농가의 적극적 방역 노력 유도로 가축전염병 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재해에 따른 간척지 영농임대료 감면 기준 개선

현행 임대 간척지에서 농업법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에 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차한 농업법인별 피해율에 따라 임대료 감면

* 피해율 30~40%미만인 경우 45%감면, 50~60%미만 70%감면, 80%이상 100%감면

개선 재해가 발생한 간척지의 필지(지번)별 피해율을 기준으로 임대료 감면 규모 산정 (「매립지 등 관리·처분규정」 훈령 개정, '26.12월)

기대효과 재해 발생 시 간척지 임차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

□ 공공비축미 중간 정산금 50% 인상

현행 공공비축 비 구매 직후 농가에 40kg 포대비 기준 4만원을 중간 정산금으로 지급 (최종 매입가의 50%수준)

개선 중간정산금을 6만원으로 인상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개정, '26.8월)

기대효과 수확기 농가의 현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영농자금대출 등 외부자금 차입 감소를 통한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4. 사람과 동물 더불어 행복한 사회

□ 동물미용업 출장 영업기준 마련

현행 동물미용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된 영업장(차량 포함)에서만 영업이 가능

* 동물미용업 :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등록 업체 10,172개, '24년)

개선 등록 동물미용업체에 한해 출장 영업 허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26.12월)

* (영업범위) 영업장, 미용업 자동차 이용 출장 영업 → +소유자의 주거지

기대효과 동물소유자의 편의성 확대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자율성 제고

□ 동물장묘업 범위·시설유형 확대

현행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동물장묘업 시설은 장례식장, 화장시설, 건조장시설, 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로 한정

개선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을 허용하고 동물장묘업의 처리시설에 동물자연장 시설 허용(「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 '26.12월)

기대효과 동물소유자의 편의성 확대 및 영업의 자율성 제고

□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방식 개선 및 진료비(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현행 진찰·투약 등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지역별 최고·최저·평균 값을 공개하고, 질병예방과 치료목적의 진료비 102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개선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를 개별병원별 공개로 개선하고,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을 112종으로 확대

*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 '26.7월) 및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개정, '26.1월 既 완료)

기대효과 반려인의 선택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완화

□ 반려동물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 마련

현행 반려동물의 질환개선에 도움이 되는 특수목적 영양사료 기준 미비

개선 주요 다빈도 질환(심장질환, 당뇨 등)에 특화된 특수목적 영양사료 성분 기준 마련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 '26.12월)

기대효과 반려동물 사료산업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5. 민생규제 합리화

□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중복규제 개선

현행 배달음식 원산지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배달앱 등 플랫폼과 배달 음식 포장재·스티커·영수증 등에 표시하도록** 규정하여 판매자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

개선 플랫폼 앱을 통해 조리음식 주문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포장재·스티커 등의 오프라인 표시 생략 허용**(「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 '26.11월)

기대효과 포장재 교체, 스티커 인쇄 등 부대비용 절감 등으로 **소상공인 부담완화**

□ 고병원성 AI 소득안정비용 지원 대상 확대

현행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행정명령)** 시행으로 방역대 내 농장으로 입식이 예정된 병아리 폐기 피해를 **오리 부화장*에 한정하여 지원**

* 동절기 사육제한으로 오리 사육농장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대체 입식 농장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 유통망이 제한적인 개인 토종닭 부화장의 경우 동일 피해가 발생함에도 지원 제외

개선 **개인 토종닭 부화장을 피해 지원 대상에 추가**(「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개정, '26.9월)

기대효과 적극적 행정명령 이행에 따라 발생한 피해보상 합리화로 농업인 부담 완화

□ 농할상품권 가맹 범위 확대

현행 **전통시장 내 또는 인근의 점포만** 농할상품권 가맹 신청 가능

* 가맹점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취급 품목이 농축산물이며 제로페이 가맹점

개선 농할상품권 가맹 범위를 국산 농축산물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청과점, 정육점 등 지역 중소유통업체까지 확대**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 추진계획」 개정, '26.4월)

기대효과 소비자 접근성 제고 및 소규모 유통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 인삼류 연산 혼합 포장제품 표시기준 명확화

현행 각기 다른 생산년도의 인삼류를 혼합하여 포장할 경우 그 생산년도의 표시 방법 부재

개선 생산년도 혼합 포장시 ①**모든 생산년도를 표시하거나** ②**가장 오래된 원료삼을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인삼산업법」 개정, '26.10월)

기대효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인삼류 잔여재고로 인한 **업계 부담 완화**